

300-3-094. 신문조서(權五高 외 51명 치안유지법 위반)

■ 權五高 외 51인의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명예훼손 상해폭행죄의 豫審係 訴訟記錄 수록

- 1926년 10월 9일 保釋中인 朱鍾建의 居所變更届와, 구류 중인 朴純秉의 맹장염수술 후 사망보고가 있다.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新義州地方法院 豫審中 재판소법 8조에 따라 京城地方法院 豫審係로 移送決定됨에따라 7월 21일 移監되었다. 그 후 보석신청이 불허 되었으며, 구류기간 갱신이 여러 차례 있었다.
- 1926년 11월 19일 朴來源 외 11명의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사건의 증인 소환이 있었고, 22일 2차 소환이 있었다. 5월 4일 본적 및 전과조회회 회신이 있었고, 金炳魯·金用茂·森井·李宗夏·權承烈·韓根祖·李仁·李昌輝 등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. 時代日報 記者 朴純秉은 8월 25일 사망하였다.
- 1927년 3월 31일 權五高 외 51인의 예심종결을 결정하였다. 權五高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 1919년 制令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이다. 朴憲永 등과 모의하여 제국국체변혁, 사유재산제 부인의 목적으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고 책동하였다. 각 지역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위한 선전·불온문서를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. 각자의 예심종결 결정 등본 송달증서와 소송기록 송부서 기록이 문서철에 있다.